

출석정지등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 [1심]	사건유형	학교폭력
원고	□□□ 외 2명	피고	△△△△△△△△△△학교장
판결선고일	[1심]2020. 6. 5. 원고패	비고	
사건개요	<p>○ 원고들은 2018. 3.경부터 피해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명 패드립과 성과 관련된 저속한 램을 하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하였고, 피해학생들이 1학기 말에 원고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잠시 위와 같은 언행을 중단하였다가 여름방학 이후에 이를 다시 반복하였음. 이에 피해학생들은 2018. 12. 18. 원고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p> <p>○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12. 28.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이라고 평가하고, ‘원고1에게 출석정지 15일, 사회봉사 5일, 원고2에게 출석정지 10일, 사회봉사 5일, 원고3에게 출석정지 3일, 사회봉사 5일’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 7.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함.</p> <p>○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들의 처분에 대해 ‘원고1에게 출석정지 10일, 사회봉사 5일, 원고2에게 출석정지 7일, 사회봉사 5일, 원고3에게 출석정지 2일, 사회봉사 5일’로 각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p>		
주 문	<p>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p> <p>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p>		
판결이유	<p>○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p> <p>① 자치위원회는 원고1에게 합계 12점, 원고2에게 합계 11점, 원고3에게 합계 10점의 판정점수를 매겼는데,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이는 출석정지조치에 해당하는 점수이다.</p> <p>② 원고들은 2018년 초경부터 패드립과 성과 관련된 저속한 램을 하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하여 학급 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소수 그룹인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피해학생들이 받는 피해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자치위원회는 주도성의 정도, 언행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행동의 심각성을 평가한바, 이를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p> <p>③ 원고들의 행동은 2018년 1학기에 시작되었고, 피해학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도 지속되었다. 원고들의 언행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해학생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바, 행동의 고의성이나 지속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평가한바, 이를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p> <p>④ 피해학생들이 원고들을 용서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화해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p>		

	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반성 정도를 평가한바, 이를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